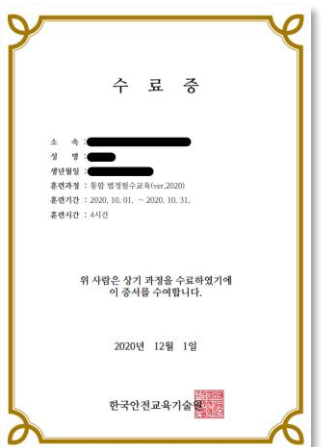


법정필수교육 수료증 관련 사항

(고용노동부 답변 사항)

HRD사업본부, HRD영업팀

민원 신청 내용	
제목	수료증 관련 문의
내용	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,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,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,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법적 필수교육을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수료 시 수료증에 해당 내용이 적혀져 있지 않는 경우 과정정보(과정명에 있는 과정명 ex)1차시 개인정보보호교육, 2차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, 3차시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, 4차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기재 및 해당 과정의 세부내용)를 같이 첨부하여 제출시 관할 부처에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. 첨부 파일과 같이 제출하여도 인정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.
첨부 파일	교육수료증_확인용.pdf 과정정보_통합 법정필수교육(ver.2020).pdf
피민원인명	
피민원인 근무처명	(주)한국안전교육기술원
피민원인 주소	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에이스하이엔드타워3차 304호
피민원인 연락처	02-6084-2014



통합 법정필수교육(ver.2020)	
학습시간	4시간 (총 4차시)
학습목표	개인정보보호 교육, 성희롱 예방교육,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,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통해 올바른 직장 내 인사관리를 달성할 수 있다.
학습대상	법정 교육이 필요한 사업자
학습형태	자기주도 학습
수료기준	진도율 100%
학습자료	시범주 법정 필수교육 매시 10분

답변 내용	
답변일	2020-12-03 00:04:00
처리결과 (답변내용)	<p>1. 안녕하세요?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이경은입니다.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.</p> <p>2. 귀하의 민원내용은 '법정의무교육 실시 인정여부'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,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</p> <p>가. 노동관계법령상 사업주가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주요 교육으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(500만원 이하 과태료),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4에 의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(300만원 이하 과태료), 근로자복지급여보장법 제32조에 의한 퇴직연금 운영상황 등 교육(퇴직연금제도 운영사업장만 해당, 1천만원 이하 과태료),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안전보건교육(500만원 이하 과태료)가 있습니다.</p> <p>나. 귀 질의와 관련하여,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육인정 증명자료에 대하여 법원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는 없으나, 귀하께서 첨부하신 내용과 같이, 수료증 외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과정명, 전체학습목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교육실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 - 다만, 지적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실무처리기관이 아닌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상담기관으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, - 교육실시 인정여부 및 수료증 발급과 관련 당사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라면,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노동관리 지도를 받으시길 조언드립니다. <p>◆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(지)청 찾기 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 → 상단의 '기관소개'에서 지방청/고용센터 찾기 →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→ 상단 '지청소개'에서 찾아오시는길(본청)에 주소 및 연락처 확인</p> <p>라. 아울러, 고용노동부에서 소관하고 있지 않은 개인정보보호교육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(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: http://www.privacy.go.kr, 02-2100-3399)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</p> <p>3. 지적 고객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하신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, 위 답변 내용이 질의취지와 다른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이경은 주무관(☎052-702-5178)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.</p>